

- 제2020-1356호 :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고시공고
- 제2020-1357호 : 서울특별시 마포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열람 공고
- 제2020-1358호 : 의류수거함 강제철거 공시송달 공고
- 제2020-1364호 : 마포구 염리동 172-10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결정(안) 열람공고
- 제2020-1365호 : 마포로1구역 제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 공람공고
- 제2020-1389호 : 마포구 건축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

공 람										

1.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구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마 포 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
특별시 마포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아래와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유 동 훈 인

2020년 11월 12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1348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대상임을 인지하는”을 “대상임이 확인된”으로, “환수하고 환수방법은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를 “환수한다”로 한다.

제12조 중 “「서울특별시마포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환수) 구청장은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9조에 의한 보상금 지급 제외 <u>대상임을 인지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상금을 환수하고 환수방법은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u>	제10조(환수) ----- ----- ---- <u>대상임이 확인된</u> ----- ----- <u>환수한</u> 다.
제12조(피신고자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피신고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 <u>서울특별시마포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u> 」에 의거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피신고자에 대한 조치) -- ----- <u>「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u> ----- -----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
특별시 마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아래와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유 동 훈 인

2020년 11월 12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1349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있으며,”를 “있다.”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신고 등) ①	자율방법대를 신설 ·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 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자율방법 대 설립 · 등록 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를 서울특별 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서를 접수한 때에는 적합성 및 사실 여부 등을 확인 · 검토 한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라 자율방법대 설립 등록 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방법대의 대표자는 방법대가 해산하거나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구청장에 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구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마포구 자율방법대 등록대 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 다.			<삭 제>
제8조(자율방법대연합회) ① (생				제8조(자율방법대연합회) ① (현

략)

② 제1항에 따른 연합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자율방범대연합회 설립·등록 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자율방범대연합회 설립·등록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적합성 및 사실 여부 등을 확인·검토한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자율방범대연합회 설립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연합회는 합동순찰, 합동 캠페인, 공익사업 등 방법대의 각종 협력 사업을 주관하고, 방법대의 활동을 지도·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활동상황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⑤ (생략)

행과 같음)

<삭제>

<삭제>

④ -----

----- 있다. <후단 삭제>

⑤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
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아래와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유 동 훈 인

2020년 11월 12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1350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중 “제4호까지”를 “제3호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0조(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구청장은 제27조제2항제1호부터 <u>제4호까지</u> 에 해당되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게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제30조(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 -- <u>제3호까지</u> ----- ----- -----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
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
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아래와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유 동 훈 인

2020년 11월 12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1351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본문 중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의 공유재산(물품을 포함 한다)을 무상사용, 수익하거나”를 “구청장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구	제16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구			
<u>청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의 공</u>	<u>청장은</u>	-----		
<u>유재산(물품을 포함 한다)을 무</u>		-----		
<u>상사용, 수익하거나</u> 구의 공유		-----		
재산을 무상대부 할 수 있다.		-----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		-----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		-----		
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				
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
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아래와 같이 공포
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유 동 훈 인

2020년 11월 12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1352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17조를 따르되, 그 기산일은 사용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 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17조에 따르며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 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 다. (생 략)	제15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 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17조를 따르되, 그 기산일은 사용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 로 한다.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
특별시 마포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아
래와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유 동 훈 인

2020년 11월 12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1353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대규모 점포와”를 “법 제37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과”로, “50인 이상의 연서로, 법 제8조의 대규모 점포 개설자 및 법 제12조 제2항의 대규모 점포 관리자는 단독으로 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조정 신청) ① <u>대규모 점포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50인 이상의 연서로, 법 제8조의 대규모 점포 개설자 및 법 제12조제2항의 대규모 점포 관리자는 단독으로 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u> ② (생략)	제9조(조정 신청) ① <u>법 제37조에 따라 대규모 점포등과 -----</u> <u>----- 위원회-----</u> ----- ----- ----- -----.
	②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
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아래와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유 동 훈 인

2020년 11월 12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1354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실태조사 등) 구청장은 법 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한 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u>법 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한 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u> ② 구청장은 <u>제1항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사회복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u>	제7조(실태조사 등) 구청장은 <u>법 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한 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u>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아래와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유 동 훈 인

2020년 11월 12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1355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3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보고 및 검사) ① ----- ----- ----- -----.
1. <u>보조사업을 개시(착공)한 때에는 사업개시(착공)보고서</u>	<u><삭 제></u>
2. <u>보조금에 대한 매분기의 경리보고서</u>	<u><삭 제></u>
3. · 4. (생략)	3. · 4.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아래와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유 동 훈 인

2020년 11월 12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1356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전기자전거”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자전거를 말한다.

제5조제1항 중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를 “법 제5조”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자전거주차장과 공용주차장, 대중교통 환승거점, 버스환승장, 공공기관 주차장 등에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구청장은 자전거주차장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4.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 4. (현행과 같음) 5. “전기자전거”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자전거를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 ⑤ (생략) <u><신설></u>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 -- 법 제5조----- ----- ----- ----- -----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6조의2(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자전거주차장과 공영주차장, 대중교통 환승거점, 버스환승장, 공공기관 주차장 등에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자전거주차장의 운영 등)

① (생략)

②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주차 후 10일 이상 동일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자전거소유자나 위탁자에게 무단방치 여부를 확인하고 무단방치로 판명된 때에는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자전거주차장의 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자전거주차장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아래와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유 동 훈 인

2020년 11월 12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1357호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징수) 과태료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부과금액(단위 :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 「지역보건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 제1항제1호	100	200	300
2. 「지역보건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 제1항제2호	100	200	300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미래성장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아래와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유 동 훈 인

2020년 11월 12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1358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미래성장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미래성장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중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지역원로 및 전문가의 건의·자문을 수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를 “**서울특별시**”로 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3항) 중 “**각 회의**”를 “**자문단**”으로, “**각각 위원**”을 “**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4항) 중 “**각 회의의 위원**”을 “**자문단**”으로, “**많은**”을 “**많은,**”로 한다.

① 자문단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자문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자문단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중전의 제3항) 중 “**각 회의의 부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7조 전단 중 “**각 회의는 자문단**”을 “**자문단**”으로 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각 회의는**”을 “**자문단은**”으로, “**각 회의의 재적위원**”을 “**재적위원**”으로, “**임시회**”를 “**임시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각**”을 “**자문단의**”로 한다.

① **위원장은 자문단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9조 중 “**각**”을 “**자문단**”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의견청취 등**)”을 “(**의견청취**)”로 하고, 같은 조 및 제1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의견청취**) **자문단은 건의 및 자문 등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자문단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제10조에 따라 자문단 회의에 출석한 마포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가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위촉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미래성장자문단의 전문가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마포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미래 지향적인 정책 실현을 위해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지역원으로 및 전문가의 건의·자문을 수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미래성장자문단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u>서울특별시</u> ----- ----- ----- ----- -----.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정책 분야별로 지역원로회의와 전문가 회의(이하 “각 회의”라 한다)로 각각 구분하여 구성 및 운영하며, 필요한 경우 전체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각 회의는 분야별로 각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두고, 각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삭 제>
③ 각 회의의 위원장 및 부위원	② 자문단-----

장은 각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 설>

④ 각 회의의 위원은 지역발전에 관심이 많고 자치행정, 복지, 경제, 관광, 환경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회의의 위원장은 각각 그 회의를 대표하며, 소관 회의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전체회의의 위원장은 각 회의의 위원장 중에서 호선한다.

③ 각 회의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위원 -----.

④ 자문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자문단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자문단-----
----- 많고, -----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삭 제>

② 부위원장-----

-----.

제7조(간사와 서기) 각 회의는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간사는 자문단 담당 부서장으로, 서기는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8조(회의) ① 각 회의의 위원장은 각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각 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구청장의 요청 또는 각 회의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각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회의록) 각 회의의 간사와 서기는 회의내용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 · 관리 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① 자문단은 건의 및 자문 등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제7조(간사와 서기) 자문단-----

-----.

-----.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자문단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자문단은 ----- 재
----- 적위원 -----

- 임시회의-----.

③ 자문단의 -----

-----.

제9조(회의록) 자문단 -----

-----.

제10조(의견청취) 자문단은 건의 및 자문 등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은 제2조 각 호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워크숍·토론회·세미나·포럼·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구청장은 회의 등에 참석한 위원 또는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마포구 소속 공무원이 자문단 위원으로 참석한 경우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원(이하 “구의원”이라 한다)이 구의원의 자격으로 참석한 경우

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자문단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제10조에 따라 자문단 회의에 출석한 마포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서 의결된 어
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마
포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를 아래와 같이 공
포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유 동 훈 인

2020년 11월 12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1359호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서울특별시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 제목 “(계리의 원칙)”을 “(회계처리의 원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계리”를 각각 “처리”로 한다.

제2조(「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호 중 “양양 및”을 “계승발전 및”으로 한다.

제3조(「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미연에”를 “미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30조(계리의 원칙) ① 공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u>계리</u> 하여야 한다.	제30조(회계처리의 원칙) ① ---- ----- ----- ----- <u>처리</u> -----.
② 공단은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u>계리</u>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따른다.	② ----- --- <u>처리</u> ----- -----.

2.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6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제6조(표창장) -----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지역사회발전 및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 <u>양양</u> 및 주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와 그 임직원	6. ----- ----- <u>계승발전</u> 및 ----- ----- -----

3.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6. (생략) 7. “제설·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u>미연에</u> 방지하여 인명보호와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8. (생략)	제2조 (정의) ----- -----. 1. ~ 6. (현행과 같음) 7. ----- ----- ----- ----- ----- ----- <u>미리</u> ----- ----- -----. 8.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
특별시 마포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아래와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유 동 훈 인

2020년 11월 12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1360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성인기초교육·문자해득교육”을 “성인 문자해득교육”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평생교육사”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구민”을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으로, “라한다”를 “라 한다”로, “평생학습 도시”를 “평생학습도시”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지역주민”을 “구민”으로, “마포구평생교육협의회”를 “마포구 평생교육협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5조의 제목 “(구성 및 위원)”을 “(구성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장은 구청장”을 “의장은 구청장”으로, “부위원장”을 “부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

장”을 “의장”으로, “회무”를 “협회의의 사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 한”을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으로 한다.

- ① 협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을 “의장 및 부의장을 제외한 협회의의”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를 “사람이 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본문 중 “하고,”를 “하고 한 차례만”으로, “전임자”를 “전임자 임기”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공무원은”을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 담당 국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 위원”이라 한다)
 - 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1명
 - 나. 평생교육 전문가
 - 다.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
 - 라. 구 소재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협회의의 회의를 소집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위원장”을 “의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9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마포구”를 “서울특별시 마포구”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근거리 학습권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동 단위로 평생학습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5조 중 “범위내”를 “범위”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의회 위원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협의회로 본다.

제3조(협의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새로 위원을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마포구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u>성인기초교육·문자해득교육</u> ,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생략) 3. “평생교육사”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학교에서 평생교육관련 과목을 일정학	제2조(정의) ----- ----- 뜻은 -----. 1. ----- ----- --- <u>성인 문자해득교육</u> --- ----- ----- ----- ----- ----- -----. 2. (현행과 같음) 3. “평생교육사”란 「 <u>평생교육법</u> 」(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부

점 이상 이수한 자 또는 법 제 25조에 따라 평생교육사 양성 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제3조(평생교육의 진흥)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평생교육을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 도시 조성 노력한다.

② (생략)

제4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고 구청장의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1. ~ 3. (생략)

제5조(구성 및 위원)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여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평생교육의 진흥) ① -----

-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라 한다-----
----- 평생학습도시-----.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설치 및 기능) ① -----
----- 구민-----

----- 마포구 평생교육협의
회-----
-.

② ----- 각 호-----

-----.

1. ~ 3. (현행과 같음)

제5조(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복지교육국장이 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 학무국장

2. 위촉직 위원 : 평생교육 전문가,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의장은 구청장-----
부의장-----
--.

③ 의장-----
협회의의 사무-----
-----.

④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

-----.

⑤ 의장 및 부의장을 제외한 협의회의의 ----- 사람이 된다.

1.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 담당 국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 위원”이라 한다)

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1명

나. 평생교육 전문가

다.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

라. 구 소재 평생교육 관계 기

⑥ 구청장은 위촉 위원 본인의 면직의사가 있거나 질병,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은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⑧ 협의회는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교육지원과장이 된다.

⑨ (생략)

제6조(회의)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구청장이 부의하는 안건이 접수되었을 때

3. (생략)

② (생략)

제8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관의 운영자

⑥ -----

해당 -----.

⑦ ----- 하고

한 차례만 -----

----- 전임자 임기-----

-----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

⑧ -----

----- 1명-----

-----.

⑨ (현행과 같음)

제6조(회의)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협의회를 소집한다.

1. 의장-----

--

<삭 제>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구민의 평생교육 기회를 증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 평생학습센터(이하 “평생학습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단서 신설>

② (생략)

제10조(기능) 평생학습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 7. (생략)

제15조(자원봉사자) 구청장은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활용하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설치) ① -----

----- 서울특별시

마포구 -----

----. 다만, 근거리 학습권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동 단위로 평생학습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기능) -----

-- 각 호-----.

1. ~ 7. (현행과 같음)

제15조(자원봉사자) -----

범위-----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
특별시 마포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
례를 아래와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유 동 훈 인

2020년 11월 12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1361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삭제하고,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청소한 개인하수처리시설부터 적용한다.

[별표 3]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
부과기준(제10조제1항 관련)

구 분		부과기준	부과금액	비 고
분 뇨	기 본	400ℓ	10,000원	
	초 과	10ℓ당	150원	
개인하수 처리시설	기 본	0.75m ³	22,500원	
	초 과	0.1m ³ 당	1,800원	
	지하 할증	정화조청소요금	7.0%	
	야간 할증	정화조청소요금	7.0%	
	공휴일 할증	정화조청소요금	7.0%	

- 비고 : 1. 정화조 지하할증 요금은 흡인식 차량외 대행업체의 가압펌프를 별도로 사용하는 지하 작업에 한하며 자체 가압펌프 사용 시 제외
2. 야간청소시간은 22:00부터 익일 04:00까지로 한다.
3.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로 한다.
4. 지하·야간·공휴일 할증 시 각각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7조(분뇨수집·운반업자의 의무) ① 분뇨수집·운반업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 청소를 실시한 경우 그 정화시설이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구청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② 분뇨수집·운반업자는 매월 청소실적과 수수료 징수실적을 다음 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3]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 부과기준(제10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table><tr><th colspan="2">구분</th><th>부과기준</th><th>부과금액</th><th>비고</th></tr><tr><td rowspan="2">분뇨</td><td>기본</td><td>400ℓ</td><td>10,000</td><td></td></tr><tr><td>초과</td><td>10ℓ</td><td>150</td><td></td></tr><tr><td rowspan="6">개인하수처리시설</td><td>기본</td><td>0.75㎡</td><td>20,350</td><td></td></tr><tr><td>초과</td><td>0.1㎡당</td><td>1,540</td><td></td></tr><tr><td>지하할증</td><td>정화조 청소요금</td><td>7.0%</td><td></td></tr><tr><td>야간할증</td><td>정화조 청소요금</td><td>7.0%</td><td></td></tr><tr><td><신설></td><td><신설></td><td><신설></td><td></td></tr><tr><td><신설></td><td><신설></td><td><신설></td><td></td></tr></table> 비고 : 1. 정화조 지하할증 요금은 흡인식 차량외 대행업체의 가압펌프를 별도로 사용하는 지하작업에 한하며 자체 가압펌프 사용	구분		부과기준	부과금액	비고	분뇨	기본	400ℓ	10,000		초과	10ℓ	150		개인하수처리시설	기본	0.75㎡	20,350		초과	0.1㎡당	1,540		지하할증	정화조 청소요금	7.0%		야간할증	정화조 청소요금	7.0%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삭 제> [별표 3]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 부과기준(제10조제1항 관련) <table><tr><th colspan="2">구분</th><th>부과기준</th><th>부과금액</th><th>비고</th></tr><tr><td rowspan="2">분뇨</td><td>기본</td><td>400ℓ</td><td>10,000원</td><td></td></tr><tr><td>초과</td><td>10ℓ</td><td>150원</td><td></td></tr><tr><td rowspan="6">개인하수처리시설</td><td>기본</td><td>0.75㎡</td><td>22,500원</td><td></td></tr><tr><td>초과</td><td>0.1㎡당</td><td>1,800원</td><td></td></tr><tr><td>지하할증</td><td>정화조 청소요금</td><td>7.0%</td><td></td></tr><tr><td>야간할증</td><td>정화조 청소요금</td><td>7.0%</td><td></td></tr><tr><td>공휴일할증</td><td>정화조 청소요금</td><td>7.0%</td><td></td></tr><tr><td></td><td></td><td></td><td></td></tr></table> 비고 : 1~2. (현행과 같음) 3.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로 한다. 4. 지하·야간·공휴일 할증 시 각	구분		부과기준	부과금액	비고	분뇨	기본	400ℓ	10,000원		초과	10ℓ	150원		개인하수처리시설	기본	0.75㎡	22,500원		초과	0.1㎡당	1,800원		지하할증	정화조 청소요금	7.0%		야간할증	정화조 청소요금	7.0%		공휴일할증	정화조 청소요금	7.0%					
구분		부과기준	부과금액	비고																																																																											
분뇨	기본	400ℓ	10,000																																																																												
	초과	10ℓ	150																																																																												
개인하수처리시설	기본	0.75㎡	20,350																																																																												
	초과	0.1㎡당	1,540																																																																												
	지하할증	정화조 청소요금	7.0%																																																																												
	야간할증	정화조 청소요금	7.0%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구분		부과기준	부과금액	비고																																																																											
분뇨	기본	400ℓ	10,000원																																																																												
	초과	10ℓ	150원																																																																												
개인하수처리시설	기본	0.75㎡	22,500원																																																																												
	초과	0.1㎡당	1,800원																																																																												
	지하할증	정화조 청소요금	7.0%																																																																												
	야간할증	정화조 청소요금	7.0%																																																																												
	공휴일할증	정화조 청소요금	7.0%																																																																												

시 제외 2. 야간청소시간은 22:00부터 익일 04:00까지로 한다.	각 적용한다.
---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
특별시 마포구 보전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아래와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유 동 훈 인

2020년 11월 12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1362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는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수수료 및 진료비 (제2조 관련)

구 분	종 목	단 위	금 액	비 고
1. 건강진단 결과서 및 진단서, 제증명	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서	1통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 진단규칙」 제5조에 따른 수수료	
	나. 건강진단서	1통	1,500원	
	다. 사체검안서	1통	5,000원	
	라. 사망진단서	1통	500원	
	마. 출생, 사산 또는 사태증명서	1통	500원	
	바. 방사선필름사본교부	CD 1장	3,000원	
	사. 그 밖에 사실 공부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서	1통	300원	
	아. 기존 발급증명서 추가 발급	1통	300원	

구 분	종 목	단 위	금 액	비 고
2. 유료접종	가. 간염	1/0.5 ml	1) 보건소의 유료접종 수수료는 약품의 최근 구입가격으로 한다. 다만, 100원 미만의 금액 중 1원 이상 49원 이하의 경우에는 50원으로 하고 51원 이상 99원 이하의 경우에는 100원으로 한다.	
	나. 장티푸스	0.5ml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받은 병·의원의 접종 수가는 약품공급가격과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른 진료수가 기준 중 생물학적 제제주사료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100원 미만의 금액 산정은 1)의 단서를 준용한다.	
	다. 신증후군 출혈열	도스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받은 병·의원의 유료접종 약품공급 가격은 구입가격으로 하며 1회용 주사기를 무료로 공급할 수 있다. 다만, 매회 공급총액의 100원 미만의 금액 산정은 1)의 단서를 준용한다.	

구 분	종 목	단 위	금 액	비 고
3. 검사	가. B형간염검사	1회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른 보건기관의 진료수가 중 보건소 외래 진료비 1회 방문당 수가액	
	<u>나. A형간염검사</u>	<u>1회</u>	<u>16,000원</u>	무료대상자 · 1·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 <u>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u>
	<u>다. 콜말도검사</u>	1회	6,000원	무료대상자 · 관내 거주 만65세 이상인 사람 · 1·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 <u>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u>
	<u>라. 암표지자검사</u> (간암, 대장암, 췌장암, 난소암, 전립선암)	1항목	7,000원	무료대상자 · 1·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 <u>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u>
	<u>마. 갑상선기능검사</u> (T3, FT4, TSH)	1회	15,000원	무료대상자 · 1·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 <u>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u>
	<u>바. 구민건강검진</u>	1회	7,500원	무료대상자 · 1·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 <u>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u>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별표]				
수수료 및 진료비 (제2조 관련)					수수료 및 진료비 (제2조 관련)				
구 분	종 목	단위	금 액	비 고	구 분	종 목	단위	금 액	비 고
2. 유요접종	가. B형간염	1/0.5ml	가. 보건소의 유요접종 수수료는 약품의 최근 구입가격으로 한다. 다만, 10자리 이하 금액은 1원 이상 49원 이내의 경우 50원으로 하고 51원 이상 99원 이내의 경우에는 100원으로 한다.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받은 병·의원의 접종수가료는 약품공급가격과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른 진료수가 기준 중 생물학적 제제주사료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10자리 이하의 금액의 산정은 가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 전항에 의한 지정병·의원의 유요접종 약품공급 가격은 구입가격으로 하며 1회용 주사기를 무료로 공급할 수 있다. 다만, 매회 공급총액의 10자리 이하 금액의 산정은 가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유요접종	가. 간염	1/0.5ml	1) 보건소의 유요접종 수수료는 약품의 최근 구입가격으로 한다. 다만, 100원 미만의 금액 중 1원 이상 49원 이하의 경우에는 50원으로 하고 51원 이상 99원 이하의 경우에는 100원으로 한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받은 병·의원의 접종수가료는 약품공급가격과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른 진료수가 기준 중 생물학적 제제주사료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100원 미만의 금액 산정은 1)의 단서를 준용한다.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받은 병·의원의 유요접종 약품공급 가격은 구입가격으로 하며 1회용 주사기를 무료로 공급할 수 있다. 다만, 매회 공급총액의 100원 미만의 금액 산정은 1)의 단서를 준용한다.	
	나. 장티푸스	0.5ml				나. 장티푸스	0.5ml		
	다. 신증후군 출혈열	도스				다. 신증후군 출혈열	도스		
3. 검사	가. B형간염검사	1회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른 보건기관의 진료수가 중 보건소 외래 진료비 1회 방문당 수가액		3. 검사	가. B형간염검사	1회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른 보건기관의 진료수가 중 보건소 외래 진료비 1회 방문당 수가액	
	나. 콜밀도검사	1회		무료대상자 · 관내거주 만 65세 이상인 사람 · 1·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 1·2급 장애인		나. A형간염검사	1회		무료대상자 · 1·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 암표지자검사 (간암, 대장암, 췌장암, 난소암, 전립선암)	1항목		무료대상자 · 1·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 1·2급 장애인		다. 콜밀도검사	1회		무료대상자 · 관내 거주 만 65세 이상인 사람 · 1·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라. 갑상선기능검사 (T3, FT4, TSH)	1회		무료대상자 · 1·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 1·2급 장애인		라. 암표지자검사 (간암, 대장암, 췌장암, 난소암, 전립선암)	1항목		무료대상자 · 1·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마. 구민건강검진	1회		무료대상자 · 1·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 1·2급 장애인		마. 갑상선기능검사 (T3, FT4, TSH)	1회		무료대상자 · 1·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바. 구민건강검진	1회		무료대상자 · 1·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
특별시 마포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아래와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유 동 훈 인

2020년 11월 12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1363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경우 그 기부자에 대한 예우에 필요한 사항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발적인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부증서의 발급)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6조(기부자 예우) 구청장은 기부자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

1. 특정장소에 명예의 전당을 설치하여 기부자 명단 부착·보존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
3. 구청장 표창장·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4. 구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5. 그 밖에 제7조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의결한 사항

제7조(기부심사위원회의 기능) 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8조(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기부심사 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

2. 재정 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

3. 복지 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

④ 위촉직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성별(性別)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부심사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에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국외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부터 설치·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부심사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3조(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부터 위촉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부심사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이전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부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기의 기산일은 그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
특별시 마포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아래와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유 동 훈 인

2020년 11월 12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1364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친화도시 구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장애인친화도시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친화도시”란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회생활을 영위하도록 정책 및 생활여건이 갖추어진 도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친화도시 구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친화도시 구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여건에 맞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목표 및 추진 방향
 2.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구청장은 조성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사업) 구청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재활, 돌봄, 문화생활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 확충
2.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편의시설 확대 및 이동 지원
3. 민간영역에서의 장애인 생활 편의성 제고 유도
4. 장애인의 개별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 확대
5.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지역사회 환경 조성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기초조사 등) 구청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등을 할 수 있다.

제8조(추진실적의 평가) 구청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에게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계 법인·단체 또는 기관 및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재정지원 등) 구청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계획의 수립 · 시행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친화도시와 관련된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친화도시와 관련된 민 · 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수행한다.

제13조(위원회 구성 등)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의 임무,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복지위원회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수당 등) 구청장은 위원 중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구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한 경우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이 구의원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

제15조(포상) 구청장은 장애인친화도시 구성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 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를 아래와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유 동 훈 인

2020년 11월 12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1365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마포구민의 편익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한다.
2. “불법촬영”이란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3.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편익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 이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가 직접 운영하지 않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을 운영하는 법인·단체·개인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특별관리 대상 화장실의 지정) 구청장은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을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제6조(신고체계의 마련) 구청장은 구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계획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경찰서,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협조)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구민이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청장의 불법촬영기기 점검 정책

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 등) ① 구청장은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배포할 수 있다.

제11조(홍보)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지원) 구청장은 민간건물 건물주 또는 관리자가 불법촬영 기기 설치 여부 점검 요청 시 불법촬영 점검기기 등을 대여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
특별시 마포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아래와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유 동 훈 인

2020년 11월 12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1366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있는 아동·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 및 청소년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퇴소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으로서 법 제16조에 따라 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조치 종료 아동"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을 말한다.
3. "퇴소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으로서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퇴소아동, 보호조치 종료 아동 및 퇴소청소년(이하 "퇴소청소년 등"이라 한다)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과 자활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과 자활을 위한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 및 예산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 및 자활을 위하여 각종 사업을 발굴·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퇴소청소년 등의 주거안정 지원사업
2. 퇴소청소년 등의 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사업
3. 자립정착금 지원 및 자산형성 지원사업(금융 컨설팅)
4. 인성교육 지원사업
5. 치료 및 재활 등의 건강프로그램 지원사업
6. 정서적·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및 지원사업
7. 후견인 제도 및 후원 사업

③ 구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자립지원센터 설치 등) ① 구청장은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자활을 위한 자립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센터 운영의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협의회) ① 구청장은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과 자활을 돕기 위하여 해당 지역 주민, 시민단체, 공공기관 및 아동·청소년복지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퇴소청소년 등 자립지원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 및 자활에 필요한 복지서비스 발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 및 자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그 밖에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
특별시 마포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를 아래와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유 동 훈 인

2020년 11월 12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1367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으로부터 마포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피해 예방 및 대응방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최고기온이 33℃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되는 현상을 말한다.
2. “폭염특보”란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폭염주의보 및 폭염경보를 말하며,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기온이 33.0℃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이며, 폭염경보는 일 최고기온이 35℃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말한다.
3. “도심열섬현상”이란 폭염으로 인하여 도심부의 기온이 주변지역보다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4.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
5. “폭염저감조치”란 폭염 재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를 말한다.

가. 쿨링포그·그늘막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

나. 선풍기·에어컨·얼음조끼·쿨토시 등 냉방용품 지원

다. 도로 살수작업

라. 무더위쉼터 지정·운영·관리

마. 폭염 재난정보 및 국민행동요령 등 홍보 활동

6. “폭염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다.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홀로 생활하는 노인

라. 그 밖에 구청장이 폭염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폭염저감시설의 종류) 이 조례에서 적용하는 폭염저감시설의 종류와 정의는 별표와 같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구에서 제공하는 폭염 행동 요령에 따라 행동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종합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폭염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폭염대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2.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추진방향
3. 폭염 저감 조치의 체계적 지원 방안
4. 무더위쉼터 관리 및 지원 방안
5. 폭염취약계층 지원 방안
6. 폭염 취약시설물 안전관리 방안
7. 폭염 대비 구민행동요령
8. 폭염 피해예방 홍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의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7조(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도심열섬현상 완화사업
2. 폭염저감조치 사업

3. 무더위쉼터 확대 및 운영 지원 사업
4. 폭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특별보호 운영 사업
5.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냉방용품 지원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확대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8조(무더위쉼터 운영·지원) 구청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추진 할 수 있다.

1. 무더위쉼터 운영시간 연장
2. 무더위쉼터 운영 실태 지도·점검
3.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 냉방용품·식수·비상약 등 확보
4. 그 밖에 무더위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폭염취약계층 지원 등) 구청장은 폭염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관리
2. 선풍기 등 냉방물품 지원
3. 지붕녹화, 지붕채색 등 건축물 녹화사업
4. 그 밖에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재난도우미 운영) ① 구청장은 폭염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통장

2.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

3.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4. 보건소 건강보건전문인력

5.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

② 제1항의 재난도우미는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폭염취약계층에 방문 및 전화 등을 활용하여 건강진단, 안부확인, 폭염대비 행동요령 등 건강관리 및 보호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2조(교육 및 홍보 등) 구청장은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구민의 협조 사항 및 행동요령에 대한 구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20 - 1345 호

마포구 빗물펌프장 토출관 CCTV 설치 행정예고

우리 구에서는 하천 내부의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시 의견 수렴),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의하여 이 사항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0. 11.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설치목적

- 빗물펌프장 시설물 실시간 가동상태 확인
- 빗물펌프장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

2. 설치대상 : 빗물펌프장 토출관 CCTV 설치 3대

3. 설치장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빗물펌프장 외 2개소 한강 토출관 (상세위치 별첨)

4. 촬영범위 및 시간 : 설치장소로부터 사방 약150M 내외(24시간 상시운영)

5. 화상정보 보유기간 : 30일

6. 보관 및 관리장소 : 마포구 치수과 재해방재센터

7. 공고기간 : 2020. 11. 05.~ 2020. 11. 24.(20일)

8.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별첨2】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기한 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치수과로 제출(방문 또는 우편, 팩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0. 11. 24.까지

- 제출양식 : 의견 제출서 【별첨2】

- 문 의 처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치수과 기전팀(02-3153-9822)

- 우편 : (우03937)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마포구청 치수과

- FAX : 02-3153-9849

위 치 도



합정빗물펌프장



상수빗물펌프장



난지빗물펌프장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서

1. 행정예고 내용	마포구 빗물펌프장 토출관 CCTV 설치		
2.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	☎ 연락처: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마포구청장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20 - 169 호

노상주차장 주차구획선 설치내역 고시

「주차장법」 제10조제1항제3호, 제10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1호, 제6조의2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제2항 규정에 의거 마포구 관내 노상주차장 구획 설치내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 11. 12.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 마포구 관내 노상주차장 주차구획 설치내역

연번	설치구간	이용대상차량	운영시간	설치일자
1	월드컵로23길 8(1면)	거주자우선 배정차량	전일 (24시간)	2020. 11. 13.
2	양화로1길 86(1면)	거주자우선 배정차량	전일 (24시간)	2020. 11. 13
3	신촌로2안길 9(1면)	거주자우선 배정차량	전일 (24시간)	2020. 11. 13
4	월드컵로26길 40(1면)	거주자우선 배정차량	전일 (24시간)	2020. 11. 13
5	서강로3길 21(1면)	거주자우선 배정차량	전일 (24시간)	2020. 11. 13
6	와우산로32길 15(1면)	거주자우선 배정차량	전일 (24시간)	2020. 11. 13
7	신촌로2안길 18(1면)	거주자우선 배정차량	전일 (24시간)	2020. 11. 13
8	손기정로1길 24(1면)	거주자우선 배정차량	전일 (24시간)	2020. 11. 13